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359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35946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변론 종결 2024. 3. 8.

판결 선고 2024. 4.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별지2 기재 채권 중 140,610,097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공동피고 C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2 기재 채권 중 140,610,097원과 그 부대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3.경 제1심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 사건 회사,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9.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2019. 12. 2.경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 1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6. 11. 4.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040만 원)가 마쳐졌다.

라. C은 2019. 12. 3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2019. 12. 31.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2020카단200317)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2. 5.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L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20년 제1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무액 1억 2,000만 원, 채무발생일 2019. 8. 28., 변제기 2020. 2. 28.)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L가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N)를, J이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중복))를 중복하여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매각되어,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2022. 1. 5. 작성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배당할 금액	441,919,584원
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
채권자	남양주시
채권금액	225,390원

배당할 금액	441,919,584원
배당순위	1
이유	교부권자(당해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호증, 을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C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4. 21. C과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이 협의이혼하기 약 4개월 전인 2019. 12. 31.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피고가 위 잉여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출급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J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C이지만 피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으면서 C만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피고 부부 모두 위 대출금 채무를 아파트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자신의 지분으로 변제하더라도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L에게 귀속된 3순위 배당액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소유 지분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지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1/2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원상회복의 한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의 1/2인 218,879,421원에서 1, 2순위 배당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40,610,097원이다

3) 그런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3. 8.을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6,584,110원{= 1억 2,000만 원 + 59,178원(= 1억 2,000만 원 $\times$ 0.06 $\times$ 30/365) + 6,657,534원(= 1억 2,000만 원 $\times$ 0.09 $\times$ 225/365) + 49,867,397원(= 1억 2,000만 원 $\times$ 0.12 $\times$ 1264/365)}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앞서 본 140,610,097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구소인 원물반환청구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판사최성수

별지